

실험·실습비 운영 규정

- 제정 : 2011. 9. 1.
- 개정 : 2018. 8. 31.
- 개정 : 2020. 3. 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실험·실습비 예산, 집행,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산) ① 실험·실습비 예산은 교학처장이 징수액 총액을 학과에게 확정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실험·실습비 예산은 직전학년도 재학생수에 당해 연도 계열별 실험실습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교학처장은 실험·실습비 예산을 배정할 때 전항의 산출내역을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제3조(집행) 실험·실습비는 교비회계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용도제한) ① 실험·실습비는 다음 각호와 같은 목적 또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실험·실습
2. 학술조사, 제반 학술 활동, 답사 및 발굴
3. 견학 또는 현장실습
4. 전시회 또는 발표회
5. 공연 및 세미나
6. 특강
7. 기타 실험·실습 과목의 운영을 위한 제비용

② 전항의 비용에 상당하는 계정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재료비 및 소모품비
2. 부품 구입비
3. 임차비 및 에너지 사용료
4.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
5. 실험·실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건비(급여성 인건비는 제외)
6. 인쇄 출판비 및 도서구입비

제5조(회계) ① 각 학과장은 당해 년도 연간 실험·실습 소모품 구매계획서와 연간 실험·실습계

4-2-21 실험실습비 운영 규정

획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② 각 학과에서는 소모품대장과 실험·실습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 소모품대장에는 사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하고, 실험·실습일지에는 실험·실습 지도교수, 학년, 일시, 장소, 소요된 재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